

# 조선시대 『宋李忠定公奏議』의 간행과 활용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and Application of  
*Song-li-zhong-ding-gong-zou-yi-xuan* in the Joseon Dynasty

김민현 (Kim, Min Hyun)\*

## ◁ 목 차 ▷

- |                         |            |
|-------------------------|------------|
| 1. 서론                   | 4.2 정책적 활용 |
| 2. 중국 판본의 형성과 전래        | 5. 결론      |
| 3. 「송이충정공주의」의 조선 간행     | <참고문헌>     |
| 4. 「송이충정공주의」의 활용        |            |
| 4.1 경연교재로서의 선정과<br>그 정황 |            |

## < 초 록 >

『宋李忠定公奏議』는 宋代의 명재상인 李綱(1083~1140)의 상주문을 모은 책이다. 그는 강경한 주전론자로서 金에 대한 항전을 주장하였고, 이는 그의 저술에도 고스란히 녹아 들어 있다. 조선에서는 병자호란 이후 이강의 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데, 이는 본서의 정치론과 복수설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이 조선의 집권층에게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당 수요는 집권층에 국한되어 『宋李忠定公奏議』가 顯宗實錄字, 壬辰字 2종의 활자본으로만 간행되는 것에 그쳤고, 그나마도 복수설치의 時宜性을 잃어버리면서 사그라질 정도로 폭넓지 못했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본서의 시대성을 더욱 분명하게 반영해 주고 있다. 또한 본서는 영조의 召對 책자로 선정되어 상평법의 정비나 균역법의 시행 등에 있어 잠재적 근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要語: 李綱, 宋李忠定公奏議, 顯宗實錄字, 經筵, 召對, 英祖, 復讎雪恥, 奏議類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과 박사과정(jul9tong@naver.com)

접수일: 2015년 11월 30일 최초심사일: 2015년 12월 4일 심사완료일: 2015년 12월 21일

<ABSTRACT>

*Song-li-zhong-ding-gong-zou-yi-xuan* (Memorials and Discussions of Li Kang in the Sung Dynasty) is a collection of reports to the emperor written by Li Kang (1083~1140), the able premier in the Sung Dynasty of China. As a war-advocating hardliner, he insisted on resistance against the Jin Dynasty, and this attitude was fully reflected in his writings. Interest in Li Kang's ideas was raised in the Joseon Dynasty after Qing's invasion in 1637 because the ruling class of the Joseon Dynasty was in need of the political theory of this book and a theoretical basis for revenge on Qing. Demand for the book was limited to the ruling class, however, *Song-li-zhong-ding-gong-zou-yi-xuan* was published only in two type-printed versions using the Hyeonjongsilrok-ja type (type used in the Annals of King Hyeonjong) and the Imjin-ja type (type cast in 1772), respectively. Even it was almost extinguished because it lost timeliness for revenge on Qing. However, these facts reflect the historicity of the book more clearly. Moreover, this book is meaningful in that it was selected as a material for so-dae (royal seminars) by King Yeongjo and became a potential ground for the improvement of Sang-pyeong-beop (Price Control Law) or the enactment of Gyun-yeok-beop (Equal Service Law).

Key words: Li Kang, *Song-li-zhong-ding-gong-zou-yi-xuan*,  
Hyeonjongsilrok-ja type, gyeong-yeon (royal lecture),  
so-dae (royal seminar), King Yeongjo, revenge on Qing,  
reports to the king

## 1. 서론

李綱(1083~1140)<sup>1)</sup>은 남·북송 교체시기, 금과의 군사적 긴장관계에서 항전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주전론자이다. 그의 생애는 여러 역사서를 통해 조선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柳成龍(1542~1607)<sup>2)</sup>과 鄭經世(1563~1633)<sup>3)</sup>는 이강을 ‘송나라가 南渡한 이후로 제일가는 인재’로 평하기도 하였다. 또한 그가 송 황제들에게 상주한 글을 모은 「宋李忠定公奏議」는 동아시아 전통사회 지식인들에게 「唐陸宣公奏議」와 더불어 奏議類 서적을 대표하는 문헌으로 인정받아왔다. 특히나 본서는 병자호란 이후 조선의 지식인들에게 주목받아 북수설치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였고, 영조의 경연서로 활용되어 정책의 잠재적 근거가 되었던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중국에서 이강의 생애와 사상은 물론이고 관련 판본에 대한 연구 또한 상당부분 진행되어온 반면, 국내에서는 본서와 관련하여 단편적인 연구만이 이루어졌다.<sup>4)</sup>

따라서 본고는 향후 「송이충정공주의」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지학적 고찰을 통해 관련 판본의 체제와 간행사항 및 저본을 밝히는 것을 1차 목적으로 삼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承政院日記」를 통해 召對에서 진행된 본서의 진강방식과, 본서의 내용이 실제 정책에 영향을 주었던 구체적인

1) 宋 徽宗(재위 1100~1125) 때의 명신. 邵武(福建) 사람으로 字는 伯起, 號는 梁溪. 徽宗 政和 2년(1112) 진사가 되고, 監察御史와 兵部侍郎, 樞密史 등을 지냈다. 송나라와 금나라가 대치하던 때 강력하게 항전을 주장하다 貶謫되었다. 송나라가 남쪽으로 내려간 뒤 高宗(재위 1127~1162)이 불러 제상으로 삼았다. 儒學에 정통했고, 詩文을 잘 지었는데, 관련 저술에 「易傳內篇」 10권과 「易傳外篇」 12권, 「論語詳說」 10권 등이 있다. 佛法을 독실하게 믿어 「주역」과 華嚴의 異同을 비교하여 양자간의 일치점을 찾으려고도 했다. 儒佛二教一致論을 주장하면서 불교에 비판적이었던 朱熹와 張載 등과 논쟁을 벌였다. 시호는 忠定이고, 저서에 「梁溪集」과 「靖康傳信錄」 등이 있다.

2) 「西厓先生文集」 卷13, 雜著, 讀史蠡測.

“南渡後人才, 當以李伯紀爲第一, 武將則岳武穆. 二人者, 可當恢復之責. 其餘則未見有卓然可倚者.”

3) 「愚伏先生文集」 卷10, 書, 答李叔平.

“南渡人才, 李綱爲第一, 魏公次之. 其忠義偉然, 死而後已.”

4) 2015년 김소희가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연구」에서 임진자 교정쇄본의 사례로 「宋李忠定公奏議」를 언급하였다.

사례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송이충정공주의』의 서지학적 정보는 물론 본서의 간행과 활용이 내포하고 있는 시대성을 규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2. 중국 판본의 형성과 전래

중국에서 이루어진 본서의 판본에 대한 연구는 王路璐,<sup>5)</sup> 只誠<sup>6)</sup>의 연구를 들 수 있는데, 모두 『郡齋讀書志』, 『直齋書錄解題』 및 『四庫全書總目』에 수록된 『梁溪先生文集』의 卷數가 제각각인 점에 착안하여 그 배경을 밝히는 것에 연구 목적을 두고 현전하는 관련 판본들의 선후관계를 정리하였다. 본 장에서는 그들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양계선생문집』의 판본 전개를 살펴보고자 한다.

宋代에는 1179년 陳俊卿의 『梁谿集』 序文에 의하면 이강의 작은 아들 秀之가 주의 80권을 편집하여 진준경에게 서문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나고, 1183년 朱熹의 『양계집』 後序에서는 이강의 손자 焞이 주희에게 별도로 서문을 요청하여 받아낸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이 당시의 원고는 자금 부족으로 간행되지 못하고 필사본의 형태로 家藏되어 전해졌다. 그러다 1208년 이강의 손자 李大有的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주의 80권을 간행하게 되는데, 이대유의 발문에 의하면 주의 80권을 간행한 것 이외에도 『易傳』, 『論語詳說』, 『靖康傳信錄』, 『建炎時政記』, 『進退志』 등 ‘文集合政路帥府所記’ 170권이 후손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1213년에는 邵武知軍 陳鵬壽(陳彭壽)가 이강의 문집을 邵武에서 간행하면서 작성한 발문에 ‘공의 저술을 郡齋에서 삼가 간행하였다’고 하는데, 이 또한 주의만으로 구성되었던 듯하다.

이후 1220년 權知邵武 姜注의 발문에 ‘邵武는 공의 고향이니, 郡齋에서 주의를 이미 간행하였으나 유독 文集은 尙缺되어 있었다 … 이강의 손자 制机和 族孫 國錄이 畚畝를 전해주어 … 이에 장인들을 모아 刻梓하니 … 무릇 3월 이후에 완성하였

5) 王路璐, “《梁溪先生文集》 版本概述,” 『黑龍江史志』 23期(2013. 12).

6) 只誠, “《梁溪集》 版本問題初探,” 『黑龍江史志』 03期(2014. 2).

다' 하고, 강주와 동시기를 살았던 黃登의 발문에는 '이 문집은 가을 9월에 간행하여 겨울 12월에 완성하였는데, 모두 33책 180권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를 통해 강주가 이강 문집의 결락된 부분을 찾아 보충한 후에 전질을 새로이 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간행된 판본을 중국에서는 '嘉定邵武刻本'이라 지칭하고 있으며, 그 구성은 문집 170권과 靖康傳信錄 3권 建炎時政記 3권 建炎進退志 4권의 구성으로 도합 180권에 이른다. 현존하는 송간본은 1213년 陳彭壽 刻本<sup>7)</sup>이 유일본이자 낙질로서 38권만 남아 있는데, 명대의 유명한 장서가 安國과 毛晉의 手藏本이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후 청대 李枚와 黃丕烈이 이를 다시 소장하면서 발문을 썼고, 현재는 상해도서관에서 소장 중이다.

明代에는 1516년 「양계선생문집」 180권에서 주의 부분에 해당하는 69권을 별도로 간행하였는데, 서명은 「宋丞相李忠定公奏議」로 69권 부록 9권의 구성이며, 1622년에 重刊한 바 있다. 또한 嘉靖연간(1522~1566)에도 選集이 한 차례 간행되었으나 현재는 失傳되었으며, 이후 萬曆연간(1573~1619)에 閩人 李嗣玄이 「양계선생문집」 180권에서 일부를 뽑아낸 선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四庫全書總目」에 따르면 “「宋李忠定公集選」 44권 - 福建巡撫采進本. 奏議 15권, 文 16권, 詩 6권, 靖康傳信錄 3권, 建炎進退志 4권의 구성이며, 卷首에 本傳 1권, 行狀 3권이 별도로 있다. 閩(지금의 福建)의 李嗣元<sup>8)</sup>이 뽑은 것인데, 그 凡例에 經費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체를 다 간행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후 兵亂으로 판목이 소실되었으며, 1669년에 建寧의 李榮芳이 세 개의 불완전한 옛 판본을 구입해서 상호 보완하여 원서의 모습을 복원하고 重刊했다”고 한다.

이후 1639년에는 이사현이 편집한 萬曆刊本을 左光先, 李春熙 등이 재차 정리하여 편집하였는데, 청대 莫友芝(1811~1871)의 저술에 이르길 “「宋李忠定公奏議選」 15권, 「宋李忠定公集選」 29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sup>9)</sup> 좌광선·이춘희 등이 輯하였다고 한다. 崇禎 12년 좌광선의 서문이 있고, 16책이다. 文集과 奏議,

7) 只誠은 陳鵬壽, 姜注, 趙以夫가 간행한 보각본 중 구체적으로 어떤 판본에 해당하는지 증거가 불충분하여 알 수 없다고 하였다.

8) '李嗣玄'을 '李嗣元'으로 誤記하였다.

9) 사실상 만력간본과 동일한 구성이다.

卷首 4권을 합쳐 모두 48권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다. 이처럼 명대에는 송판본을 기반으로 선집의 형태로만 간행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다.

清代에는 四庫本과 道光本이라 불리는 판본이 있다. 사고본은 1781년에 汪如藻의 家藏本을 간행한 것으로 180권의 구성이며, 도광본은 1834년에 陳征芝의 家藏本을 간행한 것으로 180권, 부록 6권의 구성이다. 일찍이 청나라 말기의 장서가 傅增湘(1872~1949)이 사고본과 도광본을 교감한바 있는데, 도광본은 사고본에 비해 오류는 많지만 옛 판본의 모습을 지니고 있고, 사고본은 도광본에 비해 오류는 적지만 후대에 수정된 부분이 있어 옛 판본의 모습을 다소 잃었다고 밝혔다. 또한 청대에는 명대에 간행된 판본들이 모두 선집인 것과는 달리, 온전한 180권 계통들로만 간행된 것이 특징이다.

정리하면 이강의 저술은 크게 전집인 『양계선생문집』 180권, 주의 부분만을 가려 뽑은 『송송상이충정공주의』 69권, 주의와 시문에서 고르게 가려 뽑은 『이충정공집선』 48권, 세 가지 계통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조선본의 저본이 된 것은 명말 청초에 간행된 『이충정공집선』 48권 계통인데, 이는 다음 장에서 상술하도록 하겠다.

<표 1> 중국에서의 판본 전개

시대	통칭	서명	권수	비고
宋	嘉定邵武刻本 (1208~1224)	『梁溪先生文集』	180卷	
明	正德十一年邵武縣 刊本(1516)	『宋丞相李忠定公奏議』	69卷, 附錄 9卷	胡文靜 刊
	嘉靖本 (1522~1566)	未詳	未詳	失傳
	萬曆刊本 (1573~1619)	『李忠定公集選』	48卷	李嗣玄 編
	崇禎刻本 (1639)	『李忠定公奏議選』 『李忠定公集選』	48卷	左光先·李春熙 輯
清	四庫本 (1781)	『梁溪先生文集』	180卷	汪如藻家藏本
	道光本 (1834)	『梁溪先生文集』	180卷, 附錄 6卷	陳征芝家藏本

### 3. 「송이충정공주의」의 조선 간행

병자호란은 조선이 오랑캐라고 무시해왔던 여진족에게 굴복한 치욕의 역사다. 이보다 앞서 송나라는 여진족이 세운 금나라에 수도 개봉을 빼앗기고 황제를 납치당하는 등 상당한 곤욕을 당하기도 했었는데, 이것이 조선 사람들에게는 청나라에 굴욕적으로 항복한 상황과 동일시 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더 나아가 당시의 조선인들은 송나라와 조선이 많은 부분 일치한다고 여겼다. 예컨대 宋時烈(1607~1689)은 「朱子封事」를 숙종에게 바치며 “신이 삼가 생각건대, 본조 開國이 趙宋(趙光胤이 세운 송나라)과 같았기 때문에 그 말류의 폐단도 서로 비슷합니다. 국세의 善弱도 비슷하고 인심이 투박한 것도 비슷하고 기강이 떨치지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 선악이 서로 다투는 것도 비슷하고 豪強이 멋대로 난폭한 짓을 하는 것도 비슷합니다.”라고<sup>10)</sup> 하였고, 영조도 ‘사람들은 송나라가 우리나라와 같다고 말한다’고<sup>11)</sup> 하여 당대 조선인들의 인식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송나라와 관련된 역사서가 주목을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강은 당대의 명재상으로 평가받는 인물로서, 그의 주의를 금나라의 위협에 대하여 다방면으로 구체적인 대응책을(用兵·軍制·守禦·募兵 등) 제시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금나라의 후예인 여진족에게 위협을 받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이강의 주의를 필요로 하게 된 것이다. 말 그대로 時病에 적절한 대응책을 찾은 셈인데, 송시열의 (“「주자봉사」를 바치며) 주자가 당시에 이런 상황을 보고 구제할 방도를 생각했으므로 말한 것이 매우 절실하고 정성스러워 그 병통에 딱 들어맞는 약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병통을 치료하려면 이 약을 버리고 무엇으로 하겠습니까?”라는 언급에서처럼 時病을 고치고 국가를 再造한다는 관점에서 「주자봉사」의 간행과도 그 궤를 같이한다.<sup>12)</sup>

10) 「宋子大全」卷18, 疏筭, 進朱子封事奏筭疑筭.

“臣又竊念本朝立國，一如趙宋，故其末流之弊，亦與之相類。其國勢善弱類之，人心偷惰類之，紀綱不振類之，淑慝互爭類之，吏胥貪縱類之，豪強恣暴類之。朱子於當時目見其然，思有以救之，其所言痛切精懇，藥當其病。欲治今日之病，捨是藥，何以哉？”

11) 「承政院日記」, 영조 2년 9월 1일.

앞서 조선에서는 이강의 주의에 대한 수요를 중국본의 수입을 통해 일부 충족해 오고 있었다.<sup>13)</sup> 그러다 이를 병자호란 이후 숙종 대에 접어들어 「송이충정공주의」라는 서명으로 정식으로 간행하게 되는데, 16권 8책의 구성으로 기존의 중국 판본에서 일부를 취한 선집의 형태이다. 顯宗實錄字, 壬辰字로 두 차례 간행되었으며, 그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현종실록자본이다.<sup>14)</sup> 시기상 현종실록자본의 저본으로 볼 수 있는 판본은 1516년에 간행된 69권 구성의 「송승상이충정공주의」, 지금은 실전된 嘉靖本(1522~1566), 그리고 萬曆·崇禎연간에 간행된 48권 구성의 「이충정공집선」 등 명말, 청초에 간행된 판본으로 국한할 수 있다. 이중에서도 실전된 가정간본을 제외하고 69권 구성의 「송승상이충정공주의」와 48권 구성의 「이충정공집선」을 대상으로 현종실록자본과 교감을 진행하였다.

대조 결과 현종실록자본은 48권 구성의 「이충정공집선」과 본문의 대부분이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보다도 결정적인 것은 본문 끝에 있는 李又玄의 비평 유무인데, ‘又玄’은 곧 만력간본 48권을 편집한 李嗣玄<sup>15)</sup>을 의미한다. 이사현의 비평은 만력간본과 이를 토대로 편집한 승정간본에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로써 현종실록자본은 만력·승정연간에 간행된 48권 구성의 「이충정공집선」을 저본으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2) 「주자봉사」는 조선후기 國家再造의 이념아래 주희의 상소문에 실려 있는 정치론·정치 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던 배경에서 간행되었다. 이에 대한 것은 朱子思想研究會 講, 「연세국학총서 90 朱子封事」,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11) 참조.

13) 南九萬(1629~1711)이 소장하였던 1622년 간본 69권 「宋丞相李忠定公奏議」(청구기호: 古古3-75-10)가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그 외의 기관에서도 중국본이 일부 전해지고 있다.

14) 현종실록자본은 국립중앙도서관·규장각·장서각·연세대·영남대·미국 컬럼비아 대학·미국 UC 버클리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입진자본은 규장각·연세대·중국 상해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15) 李嗣玄(?~?). 字 又玄. 이강의 자손. 명말·청초 福建의 대표적인 천주교도로, 「李忠定公集選」 등을 편집했다.

조선시대 「宋李忠定公奏議」의 간행과 활용에 대한 연구

<표 2> 원문 대조표

	正德刻本 天啓重刊 「宋丞相李忠定公奏議」	崇禎刻本 饒刻 「李忠定公奏議選」	顯宗實錄字本 「宋李忠定公奏議」
「召赴文字庫祇候引對筭子」	文字庫祇候引對具已見筭子	文字庫祇候引對具筭子	文字庫祇候引對具筭子
	禹湯罪己而撫萬方無以過也然臣以謂事勢迫矣	禹湯罪己而撫萬民無以過也然臣竊謂事勢迫矣	禹湯罪己而撫萬民無以過也然臣竊謂事勢迫矣
	淪陷夷狄之虞皆在於陛下方寸間耳	淪陷夷狄之虞皆在於陛下方寸間耳	淪陷夷狄之虞皆在於陛下方寸間耳
	然道塗閭巷之人戶知之亦疑聖意或出於此	然道塗閭巷之人戶知之亦疑聖意或出於此	然道塗閭巷之人戶知之亦疑聖意或出於此
	搜攔泗汙舟船三也	攔泗汙舟船三也	搜攔泗汙舟船三也
	然知其利而不知其害也臣竊痛曾不深計而熟念之也	然知其利而不知其害臣竊痛其不深計而熟念之也	然知其利而不知其害臣竊痛其不深計而熟念之也
	使宗廟社稷有所依歸	使宗廟社稷有所歸依	宗廟社稷有所歸依
陛下如釋重負享安逸於無窮	陛下釋重負享安逸於無窮	陛下釋重負享安逸於無窮	
李又玄 評	X		周亞夫因七國之策
	X		熟于胸中故應機立辨
	X		愛君至切者安能辨此

그렇다면 현종실록자본 16권은 「이충정공집선」 48권 구성과 어떤 점이 다를까? 앞서 송정간본은 「송이충정공주의선」 15권(卷1~14-奏議, 卷15-公移), 「송이충정공집선」 29권(卷1-詔, 卷2~7-書, 卷7-啓, 卷8-序, 卷9-序·記, 卷10~12-論, 卷13-贊·頌·銘·傳, 卷14-雜文·書事, 卷15-題跋, 卷16-墓誌銘, 卷17-賦·詩, 卷18~22-詩, 卷23-靖康傳信錄 上, 卷24-靖康傳信錄 中, 卷25-靖康傳信錄 下, 卷26-建炎進退志 上之上, 卷27-建炎進退志 上之下, 卷28-建炎進退志 下之上, 卷29-建炎進退志 下之下)의 구성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종실록자본은 16권(卷1~9-奏議, 卷10-奏議·公移, 卷11-詔, 卷12-論, 卷13-靖康傳信錄 上·中, 卷14-靖康傳信錄 下·建炎進退志 上之上, 卷15-建炎進退志 上之下·下之上, 卷16-建炎進退志 下之下·宋史本傳) 구성으로 奏議 부분은 온전하지만, 「송이충정공집선」 29권에서 황제의 뜻을 대필한 詔, 時務에 대한 政見을 밝힌 論을 제외하고 나머지 書·啓·序·記·贊·頌·銘·傳·雜文·書事·題跋·墓誌銘·賦·詩는 탈락되었다.

<표 3> 崇禎刻本·顯宗實錄字本 구성 대조표

서명	세부구성	권차	내용
崇禎刻本 「李忠定公集選」 48권	卷首	卷首1	本傳
		卷首2	行狀 上
		卷首3	行狀 中
		卷首4	行狀 下
	「宋李忠定公奏議選」 15권	卷1~14	奏議
		卷15	公移
	「宋李忠定公集選」 29권	卷1	詔
		卷2~7	書
		卷7	啓
		卷8	序
		卷9	序·記
		卷10~12	論
		卷13	贊·頌·銘·傳
		卷14	雜文·書事
		卷15	題跋
		卷16	墓誌銘
		卷17	賦·詩
		卷18~22	詩
		卷23	靖康傳信錄 上
		卷24	靖康傳信錄 中
		卷25	靖康傳信錄 下
		卷26	建炎進退志 上之上
	卷27	建炎進退志 上之下	
卷28	建炎進退志 下之上		
卷29	建炎進退志 下之下		
顯宗實錄字本 「宋李忠定公奏議」 16권	卷1~9	奏議	
	卷10	奏議·公移	
	卷11	詔	
	卷12	論	
	卷13	靖康傳信錄 上·中	
	卷14	靖康傳信錄 下·建炎進退志 上之上	
	卷15	建炎進退志 上之下·下之上	
	卷16	建炎進退志 下之下·宋史本傳	

이러한 양상은 본서의 간행주체가 정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간행의 목적이 실제 정치에서의 활용에 있음을 반증한다. 다른 특징으로 목차와 관련하여 순서의 변경은 없으나 卷次를 보다 포괄적으로 편집하였고,<sup>16)</sup> 송정간본에는 行狀 3권과 宋史本傳 1권이 卷首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종실록자본에서는 行狀 3권이 탈락하고 송사본전 1권만이 卷末에 수록된 것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들은 본서를 간행함에 있어 중국본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당서를 재편집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렇다면 본서는 언제 누구에 의해 간행되었을까? 김소희는 장서각에 소장중인 安鼎福(1721~1791) 수택본의 권말 목서기록과<sup>17)</sup> 인출상태를 토대로 간행시기를 숙종연간 말기에서 영조 1년(1725) 사이로 추정하였다.<sup>18)</sup> 간행주체는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정국을 주도하는 위치에 있던 노론 혹은 소론이었을 것으로 본다. 이들은 모두 서인에서 분과하여 明에 대한 의리를 지키고 淸에 대한 복수설치를 國是로 삼을 것을 주장하였고, 그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典據로 삼을 텍스트로 「송이충정공주의」가 요구된 것이다.

이후 현종실록자본에 이어 임진자라도 본서를 한 차례 간행하는데, 임진자본은 현종실록자본을 저본으로 하여 형태적 특징은 물론이고 내용상의 誤字마저도 그대로 답습하였을 정도로 저본과 유사하다.<sup>19)</sup> 본서의 간행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 등의 사료에 언급이 없으므로 명확하게 알 수 없고, 김소희는 다만 正祖대에 간행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sup>20)</sup> 하지만 정조시기의 기록에 본서의 인출과

16) 송정간본은 卷1~15가 주의로 구성되어 있으나, 현종실록자본은 卷1~10이 주의로 이루어져 송정간본에 비해 각 권에 포함된 글의 수가 더 많다. 그러나 글의 순서나 전체 숫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다.

17) 권말에 ‘英宗乙巳王考蔚府時備來’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는 안정복의 조부 安瑞羽(1664~1735)가 울산부사로 재임하던 1725년에 가져온 책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18) 김소희,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연구 - 壬辰字 校正刷本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61(2015. 3), 108.

19) 목차에서 ‘建炎[進]退志’를 ‘建炎[建]退志’로 잘못 인출된 사례, ‘乞[屯兵]江州防秋奏狀’을 ‘乞[兵屯]江州防秋奏狀’으로 잘못 인출한 사례, ‘論封建[郡]縣’을 ‘論封建[郎]縣’으로 잘못 인출한 사례 등을 임진자본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20) 김소희(2015), 108.

관련된 언급이 없다는 점, 인출에 補字가 다수 사용되었다는 점에 비추어본다면 본서의 간행 시기는 정조대 이후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1> 顯宗實錄字本, 壬辰字本 「宋李忠定公奏議」 卷首面 비교

#### 4. 「송이충정공주의」의 활용

##### 4.1 경연교재로서의 선정과 그 정황

奏議類 서적은 다양한 수요를 가진다. 그 중에서도 군왕이 주의류 서적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그 목적이 과거의 현명한 재상에게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21) 장서각 소장(청구기호: K2-2012), 순암 안정복 수택본.

22) 규장각 소장(청구기호: 奎中 608).

조언을 받고자 하는 데에 있다. 특히나 이런 조언은 나라가 안팎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데, 영조가 즉위한 당시의 조선은 양란을 겪고 백년 가까이 지났지만 여전히 내부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 전쟁 이후 군액은 증가하고, 백성들은 良役으로 피폐해져 갔으며, 국고는 고갈되었고, 신하들은 봉당정치에 몰두했다. 심지어는 그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이인좌의 난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러한 환경에 대하여 집권층은 분명하게 위기의식을 지니고 있었다. 영조는 ‘우리나라의 세태는 속이 비어있는 썩은 나무와 같아 한심하고, 사람들은 모두 保家謀身の 꾀만 내어 구차함을 따르고 진작할 수 없으니 이는 文勝의 폐단에 말미암은 것이다. 비록 지금까지는 무사하였지만 혹시라도 병자호란과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나게 된다면 피해가 그때보다 더욱 막심할 것’이라고 한탄하였고,<sup>23)</sup> 이종성은 ‘나라의 기강과 인심이 점차 해이해져, 민심의 內姦이 이보다 심할 수가 없습니다. 邊將과 守令들도 도무지 外攘할 계책은 없고, 성상께서는 매번 편안하게 하는 것만을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하여 급급하게 自強할 방도를 생각지 않으십니다’<sup>24)</sup>라고 염려했으니, 이로써 당시의 인식을 엿볼 수 있다.

따라서 영조는 그를 보필하여 위기를 타개할 정치적 동반자를 원했고, 주의류 서적은 그에 대한 일종의 대안이 되었다. 일례로 『열성진강책목록』을 보면 숙종에서 영조에 이르기까지 經筵 책자로 경전이 편성된 반면 召對에는 역사서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영조는 그에 더하여 『朱子封事』, 『唐陸宣公奏議』, 『宋李忠定公奏議』, 『歷代名臣奏議』, 『貞觀政要』, 『治平要覽』 등 실제 정치에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는 책자를 진강한 것으로 확인된다.<sup>25)</sup>

「송이충정공주의」는 「주자봉사」와 「당육선공주의」에 뒤이어 영조가 세 번째로 진강하게 된 주의류 서적이다. 노론과 소론 인사 모두가 본서를 추천하였는데, 知事 金在魯(1682~1759), 參贊官 李宗城(1692~1759), 侍讀官 俞最基(1689~

23)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7일.

24)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20일.

25) 숙종대에도 『歷代名臣奏議』를 소대의 책자로 정한바 있으나, 그 한 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講을 마치지 못했다.

1768)가 주도적으로 추천하였다. 당시 영조가 『近思錄』에 이어 『역대명신주의』를 진강하려고 하였는데 경연관들이 앞선 진강서와 중복되는 내용이 많을뿐더러 분량 또한 방대하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대신에 『송이충정공주의』를 嘉言과 治謨가 많다는 이유로 추천한 것이다.<sup>26)</sup> 선정된 『송이충정공주의』는 삼정승의 심의를 거쳐 진강책자로 확정이 되었고, 기존에 유통되고 있던 常板<sup>27)</sup>에 현토만 새로 하여 사용되었다. 그 구체적인 일정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4> 英祖의 「宋李忠定公奏議」進講 일정표

영조10년 (1734)	일정
3월 14일	知事 金在魯와 參贊官 李宗城, 侍讀官 俞最基의 추천으로 「宋李忠定公奏議」를 경연책자로 선정하고 이를 領事에게 稟事토록 下教.
3월 17일	領議政 沈壽賢, 左議政 徐命均, 右議政 金興慶의 논의를 거쳐 경연책자로 「宋李忠定公奏議」를 확정.
3월 26일	檢討官 俞健基의 건의에 따라 經筵의 諸臣들을 牌招하여 玉堂에서 본서의 懸吐를 舉行하도록 조치.
4월 2일	인원 부족으로 檢討官 俞健基의 건의에 따라 李德壽가 본서의 懸吐를 전담하도록 조치.
4월 13일	본서의 懸吐 완료.
4월 15일	「宋李忠定公奏議」講論 시작. 범 위: 宋丞相李忠定公奏議序 ~ 卷1 上道君太上皇帝封事 경연관: 參贊官 李承源, 參贊官 李宗城, 假注書 蔡慶承, 記注官 金聖鎔, 記事官 李德重
4월 16일	범 위: 卷2 上淵聖皇帝實封言事奏狀 ~ 卷2 進備邊禦敵八事 경연관: 參贊官 李眞淳, 參贊官 李宗城, 記事官 徐命臣, 記注官 金聖鎔, 記事官 李德重
4월 17일	범 위: 卷3 修塘濬筍子 ~ 卷3 論宣撫職事筍子 경연관: 參贊官 李承源, 參贊官 李宗城, 假注書 蔡慶承, 記注官 金聖鎔, 記事官 李德重
4월 29일	범 위: 卷3 乞深考祖宗之法筍子 ~ 卷3 上皇帝封事 경연관: 參贊官 李承源, 侍讀官 金若魯, 侍讀官 俞最基, 記事官 李光躋, 記事官 鄭履儉, 記事官 李德重

26)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3월 14일.

27)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3월 14일, 영조 12년 1월 5일, 영조 34년 3월 21일, 영조 48년 5월 6일 기사 참조. ‘常板’은 조선에서 간행한 판본을 지칭하는데, 여기서는 顯宗實錄字本 『송이충정공주의』를 의미한다.

조선시대 「宋李忠定公奏議」의 간행과 활용에 대한 연구

영조10년 (1734)	일정
5월 7일	범 위: 卷4 議國是 ~ 卷4 議守 경연관: 參贊官 宋秀衡, 侍讀官 金若魯, 侍讀官 俞最基, 記事官 徐命臣, 記事官 鄭履儉, 記事官 李德重
5월 8일	범 위: 卷4 議本政 ~ 卷4 乞於沿河沿江沿淮置帥府要郡劄子 경연관: 參贊官 鄭必寧, 侍讀官 金若魯, 侍讀官 俞最基, 假注書 韓濟, 記事官 鄭履儉, 記事官 李德重
5월 10일	범 위: 卷5 乞修軍政劄子 ~ 卷5 議巡幸第二劄子 경연관: 參贊官 洪尙賓, 侍讀官 金若魯, 侍讀官 俞最基, 記事官 徐命臣, 記注官 盧以亨, 記事官 李德重
5월 19일	범 위: 卷5 乞減上供之數留州縣養兵禁加耗以寬民力劄子 ~ 卷5 具荊湖南北路已見利害奏狀 경연관: 參贊官 金聖應, 參贊官 李宗城,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5월 20일	범 위: 卷6 再乞招撫曹成奏狀 ~ 卷6 陳捍禦賊馬奏狀 경연관: 參贊官 洪尙賓, 參贊官 李宗城,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5월 24일	범 위: 卷6 奉詔條具邊防利害奏狀 경연관: 參贊官 李承源, 參贊官 李宗城, 侍讀官 俞最基,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5월 26일	범 위: 卷7 謝親筆劄子 ~ 卷7 論福建海寇劄子 경연관: 參贊官 鄭必寧,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5월 27일	범 위: 卷7 論常平劄子 ~ 卷7 論進兵劄子 경연관: 參贊官 洪尙賓,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5월 28일	범 위: 卷8 論賑濟劄子 ~ 卷8 乞推廣孝思益修軍政劄子 경연관: 參贊官 金聖應,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6월 2일	범 위: 卷9 乞不必遠召將帥劄子 ~ 卷9 奏陣車駕不宜輕動劄子 경연관: 兵曹判書 尹游, 參贊官 金聖應,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金弘澤,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6월 4일	범 위: 卷9 條具防冬利害事件奏狀 ~ 卷10 辭免知潭州第三奏狀 경연관: 參贊官 金聖應, 參贊官 李宗城,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南泰耆,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6월 5일	「宋李忠定公奏議」講論 종료. 범 위: 卷10 與宰相論捍賊劄子 ~ 卷10 申督府密院相度措置慶州盜賊狀 경연관: 參贊官 李承源, 參贊官 李宗城, 侍讀官 金若魯, 假注書 南泰耆, 記事官 李德重, 記事官 金尙魯

소대는 熙政堂에서 이루어졌고 4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奏議와 劄子로 이루어진 1~10권에 한정하여 진행되었으며,<sup>28)</sup> 그중에서도 表文은 제외되었다.<sup>29)</sup> 표문은 대다수가 詔書, 謝表, 辭免表, 혹은 劄子和 중복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정치와 관계없는 내용이기예 제외한 것으로 확인된다. 소대의 진행방식은 영조의 지시에 따라 경연관들이 본문을 읽고 각 편의 주제를 요약한 뒤, 특기할 만한 부분은 세부 설명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 4.2 정책적 활용

소대는 기본적으로 글을 강론하는 학습의 장이었지만, 책에 담긴 내용을 토대로 당시의 현안을 검토하는 정치의 연장이기도 했다. 본서 역시 소대에서 다양한 정책적 논의를 이끌어냈는데, 해당 논의는 紀綱, 納言, 軍事, 經濟, 人事 등의 분야에 걸쳐 있었다. 특히 본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던 부분은 권4의 十義이다.<sup>30)</sup> 侍讀官 金若魯는 개중에서도 議本政, 議責成, 議修德을 긴요하고 절실하다고 평하였으며, 경연관들은 議修德을 근거로 군왕의 수양을 영조에게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이강의 和·守·戰에 대한 논의를<sup>31)</sup> 인용하며 스스로의 역량을 키울 생각은 않고 오로지 금나라와의 화의만을 도모하던 송나라 조정을 비판하기도 하였다.<sup>32)</sup>

반면에 권10 이후로 詔·論·靖康傳信錄·建炎進退志·宋史本傳 등은 대단치 않으니 진강에서 제외하겠다는 언급이 여러 차례 확인된다.<sup>33)</sup> 본서의 진강이

28)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4월 15일, 영조 10년 5월 26일 기사 참조.

29)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24일 기사와 실제 진강 범위를 확인해 본 결과 表文은 모두 제외되었다.

30) 송 고종이 즉위하여 좌천되었던 이강에게 右僕射의 직을 내렸는데, 직임을 맡자마자 금나라에게 설복할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10가지 조목(國是, 巡幸, 赦令, 僭逆, 僞命, 戰, 守, 本政, 責成, 修德)의 개선안을 논하였다.

31) 싸울 여력이 있어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지킬 여력이 있어야 비로소 화의할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화의도 무작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내실을 다진 후에야 제대로 된 화의가 가능하다는 내용이다. 十議뿐만이 아니라 上皇帝封事에서도 언급된다.

32)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7일, 5월 8일 기사 참조.

정사와 관련된 부분에 국한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라 할 수 있겠다.<sup>34)</sup>

또한 본서에서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던 분야는 군사, 경제, 인사 부문이다. 군사 부문에서 이강은 송나라 군제의 폐단을 지적하고 금나라에 설복하기 위한 방안을 수차례 제시하였는데, 조선의 경연관들도 이를 토대로 조선의 폐단을 지목하고 청나라와 인접한 서북 변경에 대한 대비를 충실히 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 중 특기할 만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① 馬政의 정비

권4의 乞括買馬筭子<sup>35)</sup>를 진강하고 侍讀官 兪最基가 군마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조선은 國馬를 가을에 각 읍에 나누어 맡겼다가 봄·여름이 되면 다시 司僕에게 상납하는데, 이 과정에서 군마로 써야 할 良馬가 帖子 한 장으로 인해 세력가의 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軍兵에 공급하는 용도 이외에 帖子로 공급하는 말의 경우에는 규모를 줄여서 시기를 한정하여 공급토록 할 것을 청하였고, 말을 관장하는 사복의 物力이 戶曹에 버금갔으나, 지금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을 건의하기도 하였다.<sup>36)</sup>

### ② 戰車의 운영<sup>37)</sup>

권5의 乞教車戰筭子<sup>38)</sup>를 진강하고 侍讀官 兪最基가 조선은 전차를 운용하기

33)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4월 15일, 5월 26일 기사 참조.

34) 차차나 주의 가운데서도 우열이 있기는 했다. 예컨대 권3에 수록된 문장들을 대상으로 이종성은 진달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였고, 영조 또한 글이 錯雜하다고 평한 바 있다.

35) 금나라가 良馬를 키워 鐵騎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데, 송나라는 馬政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으니 천하의 말을 사들여 금나라의 침략에 대비할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36)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8일.

37) 이와 관련된 논의는 조선전기부터 있어왔고, 조선후기에는 강경한 북벌론자였던 尹鏞(1617~1680)가 戰車의 제작에 많은 공을 들였으나 결국 중단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효용성에 대한 논의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강이 상술한 전차의 제도는 『星湖僊說』 萬物門 - 兵車 木拒馬에도 인용되어 있다.

38) 歩兵은 騎兵을 당해낼 수 없고, 기병은 戰車를 당해낼 수 없는데, 금나라는 그 주력이 鐵騎이니, 이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戰車가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고 그 상세한 제도를 기록하였다.

부적합한 지형이지만, 西關은 지역이 평탄하여 전차를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영조도 李基夏(1646~1718)가 전차를 만들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비록 제작비용이 많이 들고 오래되면 망가져 쓸 수 없게 되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여 그 필요성을 인정하였다. 이에 전차를 제작하는 제도가 상세하게 기록된 乞敎車戰筭子를 玉堂에서 베끼도록 하고 승정원에 보내어 각 軍門의 대장들에게 반시하여 참고하도록 하였고, 마찬가지로 軍伍를 단결시키는 법이 상세하게 기록된 乞修軍政筭子도 베껴서 각 군문에 반시하였다.<sup>39)</sup>

### ③ 방만한 군비의 삭감

권5의 乞修軍政筭子<sup>40)</sup>를 진강하고 侍讀官 金若魯가 訓練都監<sup>41)</sup>의 운영에 많은 비용이 발생하므로 둔전을 다시 시행할 것과, 긴요하지 않은 軍門으로 摠戎廳·守禦廳을 지목하며 그에 대한 효과를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侍讀官 俞最基는 훈련도감의 병사들로 둔전을 운영하게 되면 도리어 폐단이 많을 것이라며 김약로의 의견에 반대하였고, 영조 또한 사나운 병사들을 농민들 가운데 섞어 둔다면 백성들이 견디지 못할 것이라고 김약로의 주장을 일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유취기는 70여 만의 병력이 평소에 제대로 훈련을 받지 못하여 위급시를 대비하기에 부족하고, 훈련도감의 병사가 한번 兼司僕이 되면 종신토록 司果의 급료를 받는다고 이를 禁斷토록 주청하기도 했다.<sup>42)</sup>

다음으로 경제 부문에서 이강은 송나라의 세수 확보와 백성들의 구휼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조선의 경연관들도 이를 토대로 궁핍한 국가 재정을 보완할 대책

39)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10일.

40) 금나라 군대를 막아내지 못하는 이유로 송나라 군대에는 紀律이 없음과 동시에 大軍을 통솔함에 있어 紀律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團結, 敎閱, 披執, 進止, 禁戒, 上下 항목을 제시하여 軍政을 개선할 것을 주장하였다.

41) 조선 전기의 군사조직인 五衛는 양인 의무 군역을 바탕으로 운영되었으나, 조선 후기의 군사조직인 訓練都監은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으로 운영되었기에 국방예산의 증액을 가져왔고, 훈련도감은 그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목활자를 만들어 출판에 뛰어들기도 했다.

42)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10일.

과 백성을 구휼하기 위한 상평법의 정비 등을 논의하였다.

① 銀子와 人蔘의 무역 금지

권6의 乞本司自備錢本前去廣西出產鹽地分計置煎鹽奏狀<sup>43)</sup>을 진강하고 參贊官 李宗城이 治國補用의 방편으로 절약을 강조하였다. 또한 동래로 들어오는 인삼과 북경에서 들어오는 은자를 거론하며 換來한 물건이 모두 閭里의 사치스럽고 쓸모없는 물건에 돌아가 通貨의 폐단이 國用に 해를 끼치므로 해당 물자의 유통을 엄금할 것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영조는 그 폐단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큰 이익이 관련된 부분인지라 금지하기 어렵다고 이를 거부하였다. 대신에 사치하는 풍속은 위에서 행하여 아래에서 본받는 것이라며 신하들의 반대에도 영조 스스로가 草衣草食을 시행한다는 전교를 내렸다.<sup>44)</sup>

② 상평법의 정비

권7의 論常平筭子<sup>45)</sup>를 진강하고 侍讀官 金若魯가 堯나 成湯과 같은 성인도 흉수나 가뭄을 막지는 못했으니 재해에 대한 대비를 충실하게 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에 더하여 조선에서는 환곡의 제도가 옛 시대의 규모와 달라서 그 대비가 부실함을 지적하였다. 영조도 조선에 常平廳을 설치하고 있으나 명칭만 있을 뿐, 평상시의 저축이 1, 2년의 대비책도 되지 못한다며 그 실태를 한탄하였다.<sup>46)</sup> 며칠 뒤, 권9의 乞益修政事筭子<sup>47)</sup>를 진강하고는 다시금 흥감하여 宣惠廳堂上

43) 송나라가 도적 등이 횡행하여 지방에서 거두어야 할 세입을 거두지 못하므로 物力이 고갈되고 國用이 耗竭되고 있으니, 다른 지방에서 생산되는 소금을 통해 國用을 보충할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44)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20일.

45) 가뭄이나 흉수와 같은 재해가 닥치더라도 사람들을 곤궁하게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충실한 대비 여부에 달려있다고 주장하고 常平에 대한 상세한 제도를 기술하였으며, 提學茶鹽官을 提學常平茶鹽等事로 고쳐서 백성들이 流離하는 것을 좌시하지 않도록 할 것을 건의하였다.

46)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27일.

47) 송나라에 災異가 닥쳐 백성들이 굶주리고 재정이 부족해지자 이강이 하늘로부터 和氣致祥의 효험을 받기 위해서는 政事에 더욱 유념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내용이다. 정사가

尹游에게 상평의 제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구하며 현재 소유한 錢貨를 곡물로 바꾸어 재해에 대비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곡식으로 인한 우환이 없도록 하라는 전교를 내렸다.<sup>48)</sup>

마지막으로 인사 부문은 본서를 진강하며 가장 강조되었던 부분이다. 영조는 병자호란의 치욕을 겪은 것도 곧 인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sup>49)</sup> 그렇기 때문에 경연관들과 이강의 정책들을 되짚어보면서 그와 같은 인재가 당대에 쓰이지 못했던 사실을 한탄하였고, 심지어는 그를 쓰지 못했기 때문에 송나라가 망하게 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기도 하였다.

경연관들은 이강이 주장한 인재의 감별법과 활용법을 영조가 유념하기를 바랐다. 侍讀官 俞取基는 권3의 上皇帝封事<sup>50)</sup>를 진강하고 ‘興衰撥亂之主는 英·哲이 아니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오직 英이어야만 마음을 쓰는 것이 굳건하고 큰일을 결단할 수 있어 소인에게 휘둘리지 않고, 哲이어야만 분명하게 옳을 보고 군자에게 위임하여 소인에게 이간질당하지 않습니다.’<sup>51)</sup>라며 인재의 선별에 앞서 군왕 스스로가 능력과 덕을 닦아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종성은 권3에서 이강이 辭免을 요청한 차자들을 진강한 후, 인재를 감별하고 나면 ‘비록 집안에서 해롭고 나라에서 흉하다고 하더라도, 이미 맡겼으면 응당 믿어야 하고, 이미 믿은 후에는 응당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라고<sup>52)</sup> 인재를 활용하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종성은 이강의 주의를 기반으로 인재를 추천하기도 했다. 권5의 論君子小人

---

바로선 후에 재용이 풍족해지고 재용이 풍족해진 후에 군비가 넉넉해지며 군비가 넉넉해지면 백성들을 쉬게 해주고 백성들을 쉬게 해주면 천심이 바로잡히고 천심이 바로잡힌 후에 和氣가 와서 풍년이 든다고 그 원리를 설명하였다.

48)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6월 2일.

49) 『承政院日記』, 영조 2년 8월 11일.

50) 휘종과 흠종이 금나라에 납치되고 고종이 즉위하자 이강이 시무에 대해 올린 내용이다. 고종에게 당장 눈앞의 화를 벗어나기 위해 금나라와 화의하여 요구조건을 무조건 들어줄 것이 아니라, 방어를 든든히 하고 인심을 다독여 기회를 엿보아 길이 보존할 계책을 세워야 할 것을 주장함과 동시에 황제에게 恭儉과 英哲을 겸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51)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4월 29일.

52)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4월 17일.

箚子<sup>53)</sup>를 진강하고 아뢰길, ‘人主가 發政施仁하는 방법은 오로지 知人과 得人에 달려있는데, 骨鯁盡瘁하는 신하가 國內에 없다면, 혹여 뜻밖의 변고가 발생하더라도 누가 수습할 수 있겠으며, 또한 어찌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까이서 모시는 반열 중에 骨鯁盡忠할 신하가 없으니 참으로 애석합니다. 趙顯命(1690~1752)과 같은 골경지신이 지금 畿外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신이 감히 청할 수는 없으나, 만약 좌우의 반열에 두신다면 좋을 듯합니다.’라고<sup>54)</sup> 같은 소론계 인사인 조현명을 추천한 것이다. 조현명은 이후 균역법의 기틀을 마련하고 영조가 역점을 두었던 탕평책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아 그 기대에 부응했다.

본서의 진강이 끝나고 영조는 ‘지난번에 『역대명신주의』를 강하려고 할 때에 이강의 주의로써 나에게 권고한 자가 부제학(이종성)이 아니었던가? 부제학이 이 글로써 나에게 권고한 것은 그 의도가 인재를 얻는 데 있었으니, 이제 講을 끝마침에 당하여 깊이 느낀 바가 있다’고 하며 이종성에게 御製詩를 하사하였다.

[御製詩]

나라 위한 일편단심 사리를 봄이 분명하니, (爲國丹心見理明)  
 高宗은 어찌 깊은 정성에 감동하지 않았으리. (高宗胡弗感深誠)  
 지금 펼쳐 읽으며 사람들에게 탄식을 자아내게 하니, (于今展讀令人慨)  
 黃劵(書冊)의 編書 속에 위대한 이름 남기었다. (黃卷編中垂大名)<sup>55)</sup>

정리하면 영조와 경연관들은 군사, 경제, 인사 등 다방면에서 이강의 정책을 수용하고 활용하고자 하였으며, 특히나 인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본사에서 인재의 감별이나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고자 하였다. 이렇듯 경연서를 두고

53) 군주의 직분은 知人에 있으며, 군자와 소인을 가려내기 위해서는 평소 행실을 보면 된다고 그 방법을 제시하는 내용이다. 뒤이어 소인의 해로움을 역설하고 제환공이 관중을 기용하여 패자가 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면서 책임자가 있는데도 알지 못하거나, 알더라도 기용하지 못하거나, 기용하더라도 믿지 못하거나, 믿더라도 소인이 관여하게 하였으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54) 『承政院日記』, 영조 10년 5월 19일.

55) 『英祖實錄』 권38, 10년(1734) 6월 5일, 5번째 기사.

의견을 나누는 과정은 영조의 대표적 개혁인 노비법의 완화, 균역법과 탕평책, 압슬형의 폐지 등 형벌의 개선이 모두 경연에서 발원되고 축성되었다는 점에서<sup>56)</sup>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즉, 영조와 경연관들이 본서를 진강하면서 나누었던 의견들은 당대의 정책 실행에 있어 잠재적인 근거가 될 뿐 아니라, 그 시대의 정책 현안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겠다.

## 5. 결 론

이강의 주의를 宋代 180권 구성의 「양계선생문집」을 기점으로 明·清代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간행되어왔다. 조선에서는 萬曆·崇禎연간에 간행된 48권 구성의 選集 「이충정공집선」을 저본으로 삼아 현종실록자 「송이충정공주의」가 처음 간행되었는데, 그 배경에는 병자호란 이후 복수설치의 기치를 내건 서인 계통이 이강의 정치론·정치의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던 의도가 저변에 있었다. 현종실록자본은 16권8책의 구성으로 48권 「이충정공집선」에서 다시금 抄出한 형태이며, 奏議와 詔, 論을 제외한 書·啓·序·記·贊·頌·銘·傳·雜文·書事·題跋·墓誌銘·賦·詩가 탈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징은 본서를 간행하는 목적이 政事에서의 활용에 국한되어 있었음을 명백하게 보여주는 것이며, 기존의 판본을 조선에서 독자적인 안목으로 재편집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그러나 「송이충정공주의」는 현종실록자본을 저본으로 한 임진자본이 간행된 이후로 조선에서 더 이상 간행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奎集이 아닌 奏議 위주의 選集 형태로 간행되었고, 목판이 아닌 활자로 간행하여 그에 소모되는 물력과 인력을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이강의 주의를와 곧잘 비견되는 「당육선공주의」는 다양한 판종으로 조선에서 아홉 차례에 걸쳐 간행되는데,<sup>57)</sup> 같은

56) 권연응, “조선 영조대의 경연,” 『동아연구』 17(1989. 2), 389.

57) 김민현,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容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

주의류 서적임에도 간행의 빈도가 이처럼 대비되는 양상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도 본서의 기본 성향을 들 수 있다. 주전론자였던 이강은 전쟁에 대비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기에, 본서에 대한 수요는 외세의 침략이라는 특정 상황에 집중될 여지가 다분했다.<sup>58)</sup> 하지만 본서의 용도가 단순히 복수설치의 근거를 제공하는 것에 국한되지만은 않았으리라 본다. 예컨대 주의류 서적은 군왕에게는 정책의 지침이 되어 政事에 활용되었으며, 관직에 있는 사대부들에게는 章疏 작성에, 과거를 준비하는 선비들에게는 策文 작성에 필요한 논리를 제공하였고,<sup>59)</sup> 때로는 학문과 적덕의 방법을 제시한다고 여겨져 사대부들에게 읽히기도 하는 등<sup>60)</sup> 다양한 쓰임새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이러한 수요를 충족할 「당육선공주의」와 같은 서적들이 이미 유통되고 있었다는 점에서 본서의 간행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육지의 주의는 이강의 것과는 달리 변려문으로 작성되어 책문 등의 작성에 참고하기 더욱 적합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다.<sup>61)</sup> 특히나 정조는 육지의 주의를 문과시험의 과목 중 하나로 선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주약선」이라는 選集으로 편찬하여 유생들이 교과서로 쓰도록 장려하였으니,<sup>62)</sup> 책문·장소의 작성에 「당육선공주의」가 우선시되었으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권책수가 「송이충정공주의」보다 간소하다는 점도 공급이나 수요의 측면에서 유통의 이점이 있

구원 한국학대학원, 2015), 2.

58) 외세의 침략을 맞아 이강의 주의를 간행하는 사례는 일본에서도 찾을 수 있다. 『宋李忠定公奏議選』이라는 選集이 安政 4년(1857) 일본에서 이강의 저술로서는 처음으로 간행되는데, 이는 그보다 앞선 1853년 미국의 페리제독이 우라가(浦賀)에 내항하고, 1854년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시모다(下田) 하코다테(箱館)를 개항하게 된 것과 연관이 있다. 서구 열강에 의해 강제로 개항하고 불평등조약을 맺게 되면서 일본의 지식인들 역시 그 대응책을 송과 금의 긴장관계에서 찾고자 한 것이다. 실제로 해당서의 서문은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고자 하는 자들은 이강의 주의를 읽으면 된다고 직접적으로 해당서의 일독을 권유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는다.

59) 김민현(2015), 1.

60) 朱子思想研究會(2011), 23.

61) 科文六體의 일종인 表와 策은 보수성이 매우 강하여 대다수가 변려문으로 작성되었다.

62) 김민현(2015), 10, 87.

있을 것이다.

『역대명신주의』나 『주자봉사』와 같은 책도 『송이충정공주의』에 앞서 주의류의 수요를 충족하는 서적으로서 유통되고 있었다. 게다가 조선 말기의 학자李建昌(1852~1898)은 ‘『역대명신주의』, 『주자봉사』, 『육선공주의』, 『이충정공주의』를 一書에 오로지 구할 필요 없다. 오로지 時政에 절실한 것을 취하면 된다’고 하였는데,<sup>63)</sup> 지식인들에게 주의류 서적을 굳이 다 읽을 필요는 없다는 공감대도 일정부분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그 대안이 이미 유통되고 있고 복수설치의 이념마저 시의성을 잃은 이상 본서의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러한 점 때문에 본서는 시대성을 더욱 두드러지게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청에 대한 복수설치가 國是였던 시기에는 본서가 관에서 활자로 간행됨과 더불어 군왕의 소대 책자로서 군사, 경제, 인사 등 다방면에서 정책적 근거로서 활용되었지만, 정조 이후 복수설치의 이념이 시의성을 잃으면서<sup>64)</sup> 간행 또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그 시대적 변화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이후 구한말에 이르러 내부대신을 역임하고 독립운동을 지원했던 閔泳達(1859~?)이 본서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sup>65)</sup> 곧, 본서에 담긴 정치론이 요구되는 시점이 다시금 도래하였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63) 『明美堂集』卷7, 全州李建昌鳳朝著, 疏, 擬論時政疏.

“上自六經四書祖宗謨訓, 以至歷代名臣章疏, 如朱子前後封事及陸贄, 李綱諸奏, 不必專求於一書. 惟取切要於時政, 更進迭御, 循環反復, 心究體驗, 默契深造, 則必有犁然而有味, 瞿然而有省.”

64) 朱子思想研究會 譯(2011), 35.

65) 연세대에 민영달 수택본(임진자본, 청구기호: 고서(수당) 354.52 이강 송-정)이 소장되어 있다.

## <참고문헌>

「梁溪先生文集」.

「宋丞相李忠定公奏議」.

「宋李忠定公集選」.

「宋李忠定公奏議」.

「宋李忠定公奏議選」.

國會圖書館司書局參考書誌課. 「韓國古書綜合目錄」. 서울: 大韓民國國會圖書館, 1968.

권연웅. “조선 영조대의 경연.” 『동아연구』 17(1989. 2). 367-389.

김민현. “조선시대 陸宣公奏議의 受容과 刊行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5.

김소희. “조선후기 금속활자본 교정사례연구 - 壬辰字 校正刷本을 중심으로 -.” 『서지학연구』 61(2015. 3). 101-123.

김종철. “한국주의류산문(韓國奏議類散文)의 문체특성: 표문(表文)을 중심으로.” 『東方漢文學』 16(1999). 217-230.

王路璐. “《梁溪先生文集》版本概述.” 『黑龍江史志』 23期(2013. 12). 126-128.

朱子思想研究會. 「(연세국학총서 90) 朱子封事」. 서울: 도서출판 혜안, 2011.

只 誠. “《梁溪集》版本問題初探.” 『黑龍江史志』 03期(2014. 2). 151-152.

최 식. “奏議類 散文의 特徵과 展開樣相.” 『東方漢文學』 31(2006. 12). 203-227.

許嘉璐. 「二十四史全譯」. 上海: 漢語大辭典出版社, 2004.

승정원일기(<http://sjw.history.go.kr/main/main.jsp>).

조선왕조실록(<http://sillok.history.go.kr/main/main.jsp>).

중국학술정보원 CNKI(<http://gb.oversea.cnki.net/Kns55/>).

한국고전적중합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rcis/>).

한국고전종합DB(<http://db.itkc.or.kr/itkcdb/mainIndexIframe.jsp>).

中國基本古籍庫(PC 설치 프로그램).

